

재입학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제17조(재입학)에 따라 재입학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에 있다. <개정 2006. 9. 1>

제2조 (대상 및 자격)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제적 전 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 (재입학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- ① 징계 제적된 자중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② 제적 후 타교에 재학 중인 자.
- ③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. <개정 2006. 9. 1., 2011. 2. 28., 2015. 9. 16.>
- ④ 폐과된 2부대(야간)의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1부대(주간)에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<신설 2015. 7. 21>

제4조 (신청 및 허가) ① 재입학 지원자는 개학 30일전까지 대학에서 원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.
- ③ 학과장은 재입학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④ 재입학한 자는 최소 1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9. 16.>

제5조 (수강신청 및 등록) ① 재입학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, 재입학금을 등록금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9. 1>

제6조 (학점인정) ① 삭제<2008. 9. 1.>

- ② 재입학자는 제적 또는 자퇴 전에 이수한 총 취득학점을 심사하여 각 학년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기준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한다.
- ③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이후 자동 소멸된다. <신설 2008. 9. 1.>

제7조 (준수사항) 재입학자는 학칙, 시행세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 1

- ① 이 제정내규는 1998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내규의 개폐는 교무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 2

- ① 이 개정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